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21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김정호·신영대·전진숙

박 정 • 윤후덕 • 김동아

이연희 · 허종식 · 정성호

박희승 • 이훈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 에너지 산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전기·가스·열 에너지 등 각 에너지 사업별 별도의 법령을 통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요 인·허가 등 규제 정책에 대한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LNG 도입의 안정성 및 LNG 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개별시 장이 아닌 전체 에너지 산업 관점에서 전력, 가스, 열 등 다양한 발전 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 규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22년 기준 전력시장 도매가격(SMP)의 87%가 LNG 발전기에 의해 결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시가스요금은 전력거래가격 및 전기요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을 위한 LNG 발전의 수급 조정기능이 확대되는 등 기존 에너지

사업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에너지 사업의 범위를 넘어 에너지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자 간 이해관계 갈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 내지 에너지 요금에 관한 인·허가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의 상호 간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자 간 다양한 이 해관계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업을 통합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증대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수급, 에너지공급시설과 에너지 요금의 적정성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통합적 의사결정 체계는 부재하여, 국가의 일관된 에너지 규제정책 수립과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함.

세계 주요국에서는 에너지부처와 별도로 의회와 정치로부터 법적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규제위원회 형태의 기관이 에너지 관련 요금 및 시장 감시 기능을 수행하여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전체 에너지 자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일 관된 규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재편하여,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처럼 전 기·가스·열 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허가 제도와 소비자요금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열위원 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정책의 통합성,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전기・가스・열 등의 에너지 시장 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기사업・도시가스사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감독, 주요 인・허가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및 이와 관련한 재정(裁定)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둠(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7까지 신설).
- 나. 전기·도시가스·열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감독원을 설립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12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3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2호) 및「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국가는 에너지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에너지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7까지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전기가스열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정부는 전기·가스 열 에너지 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에 관한 통합적·합리적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둔다.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1. 국가 전기·가스·열 수급안정화와 국민 공익보호 및 공정한 경 쟁체제 조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감독
 -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수출입 현황 감시 및 국가 에너 지수급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정명령
 - 3. 에너지 산업별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 4. 전기 · 도시가스 ·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 ·

의결

- 5.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의3(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전기가스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나.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 다.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라.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 마.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바.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사.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아.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차.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카.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 한 사항
- 타.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파.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하.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 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거. 제47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 항
- 너.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 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다. 제10조의9제2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전용 천연가 스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 마.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바. 제24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가스공급의 제한 명령 에 관한 사항
- 사.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행 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아.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 자.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에 대한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 차. 제40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개설·증설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와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사항

- 라.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 마.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에 관한 사항
- 바.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사.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 명령에 관한 사항
- 아.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4. 전기사업등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5.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 6. 다른 법령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가 심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
 -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나.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
 - 다.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
- 제10조의4(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등 공급자와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약관·규정에 관한 사항
- 3. 「전기사업법」 제7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및 「집 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4.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용 요금에 관한 사항
- 5.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 6.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 7. 「전기사업법」 제90조 및 제90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42 조의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8.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 에 관한 사항
-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열생산자와 집단에너지사업 자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10.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1.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 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5(전기가스열위원회 지도·감독) 전기가스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지도·감독한다.
 - 1. 제13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열감독원
 -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
- 제10조의6(전기가스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 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민간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1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3.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전기·가스·열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 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의 상임 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0조의16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 제10조의7(위원장) ① 위원장은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대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제10조의8(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제10조의9(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

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조의10(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1(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5. 제1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제10조의5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제10조의5각 호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의12(회의) 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 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감독·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 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 제10조의14(조사 및 의견청취)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기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관련사업 등의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 3. 현지조사

- 제10조의15(전문위원회) ①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6(사무처의 설치)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제10조의17(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가스열 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의2(전기가스열감독원의 설립) ① 전기·도시가스·열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감독원(이하 "감독 위"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3조의3(사무소) ①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②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13조의4(정관) 감독원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 3. 재산에 관한 사항
- 4. 규약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의5(임원) ① 감독원의 임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 이사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 제13조의6(업무)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및 전기사업등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2.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 3.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4. 전기사업등에 관련된 분쟁의 재정에 관한 사항
 - 5. 전기사업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이 위탁한 사항
- 제13조의7(예산 등) ①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감독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할 수 있다.

- ② 감독원의 원장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의 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전기가스열위원회에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독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 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 제13조의8(비용부담)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수 있다.
- 제13조의9(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감독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독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 제13조의10(비밀누설 등의 금지) 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독원이 아닌 자는 전기가스열감독 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3조의12(「민법」의 준용) 전기가스열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로, "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 및 감독원에"로 한다. 제2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감독원의 임직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을 "전기가스열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전기위원 회의 심의를"을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심의·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 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총리령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이 법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가 승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전기가스열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⑤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국가는 에너지사용자의 권
	익을 보호하고, 에너지공급자
	간 또는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을 예방·조정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0조의2(전기가스열위원회 설
	치 및 소관 사무) ① 정부는
	전기・가스・열 에너지 사업
	(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
	에 관한 통합적·합리적 규제
	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기가스열
	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국가 전기・가스・열 수급안
	정화와 국민 공익보호 및 공
	정한 경쟁체제 조성, 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감독
	2.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

- <u>가스 수출입 현황 감시 및 국</u> <u>가 에너지수급 안정을 위한</u> <u>수급 조정명령</u>
- 3. 에너지 산업별 규칙·약관의 인가 및 각종 행정처분 사항
-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의결
- 5.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재정(裁定)
-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 률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정부 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 정기관으로 본다.
- ④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 도록 구성되어야 하고 의사결 정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 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전문성 과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의3(전기가스열위원회의

- 심의 · 의결사항) 전기가스열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음 <u>각 목의 사항</u>
 - <u>가.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u> <u>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u> 한 사항
 - 나.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

 · 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

 한 사항
 - 다.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
 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
 의 부과에 관한 사항
 - 라.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조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 마. 제16조 및 제16조의3에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 바.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

- 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의 인가에 관한 사항
- 사.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아.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사항
- 자.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차.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카.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 다.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

 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 파.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 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하.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거. 제47조에 따른 전력산업

 기반조성계획 및 시행계획

 에 관한 사항
- 너.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

 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

 적, 관계 규정의 제정・개

 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

 항
-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3조에 따른 가스도매사 업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 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에 관한 사항
 - 나.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가스도매사업 및 합성천연 가스제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다. 제10조의9제2항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의 발 전용 천연가스 수입의 제한에 관한 사항
 - 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 마.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

 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 바. 제24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가스공급의제한 명령에 관한 사항
- 사. 제39조의7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금지행 위에 대한 행위 중지 명령 에 관한 사항
- 아.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 또는변경 명령에 관한 사항
- 자. 제40조제1항에 따른 도시 가스사업자 또는 자가소비 용직수입자에 대한 조정 명령에 관한 사항
- 차. 제40조제2항에 따른 가스 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 의 통폐합에 대한 명령에 관한 사항
-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 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3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나. 제5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 한 사항
- 다. 제6조에 따른 열 생산시 설의 신설·개설·증설에 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 와 원상회복 명령에 관한 사항
- 라. 제9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사항
- 마. 제15조에 따른 사업의 허

 가취소, 사업정지 및 과징

 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 바. 제17조에 따른 공급규정

 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 사. 제20조에 따른 업무방법 등의 개선 명령에 관한 사 항
- 아. 제26조제2항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중지 명령에관한 사항
- 4. 전기사업등의 경쟁체제 도입 및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u>5</u>.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 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에서 전기가스열위
 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7.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가 심의・의결을 요청한 사항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나.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다.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
- 제10조의4(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등 공급자와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가스열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1.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 업법」에 따른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
 -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

- 업법」에 따른 공급약관·규

 정에 관한 사항
- 3.
 「전기사업법」 제72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2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4. 「전기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 업법」에 따른 사용 요금에 관한 사항
- 5.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 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 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 6. 「전기사업법」 제29조에 따른 근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 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 7. 「전기사업법」 제90조 및 제90조의2, 「도시가스사업법」 제42조의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 8.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

- 의6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 9.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9 조에 따른 열생산자와 집단에 너지사업자 간 조정에 관한 사항
- 10. 다른 법률에서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 11.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제1항 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 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재정서

- 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 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 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 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 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 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10조의5(전기가스열위원회 지 도·감독) 전기가스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지도·감 독한다.
 - 제13조의2에 따른 전기가스
 열감독원
 - 2.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 른 한국전력거래소
 - 3.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4.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 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9 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u><신 설></u>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기관
- 제10조의6(전기가스열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전기가스열위원회 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 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의 위원은 상임위원(민간위원 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1급 이상의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1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 람
 - 3.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 는 전기·가스·열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

 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

 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

- 4.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관련 기업, 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 단체에서 15년 이상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 직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그 밖 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 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제10조의 16에 따른 사무처의 장은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제10조의7(위원장) ① 위원장은 전기가스열위원회를 대표하고,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를 주 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u><신 설></u>

<신 설>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미리 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 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요구하면 출 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 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 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 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 다.

제10조의8(위원의 임기) ①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0조의9(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4.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취한 경우
- ② 위원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조의10(겸직금지 등) ① 상임 위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 하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에 관하

- <u>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u> 로 정한다.
- 제10조의11(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람
 - 3.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 람
 -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5. 제10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제10조의5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을 제10조의5 각 호에 따른 기

<u><신 설></u>

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12(회의) ① 전기가스열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전기가스열위원회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한다.
- ④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 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

-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3.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감독·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 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⑤ 전기가스열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전기가스열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의13(위원의 제척·기피·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 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경우
 -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 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사안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 한 경우 ② 전기가스열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 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 을 할 수 있고, 전기가스열위원 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 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14(조사 및 의견청취) 전 기가스열위원회는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 따른 기능을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 면 관련기관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사업 등의 설명 또는 자

	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u>3. 현지조사</u>
<u><신 설></u>	제10조의15(전문위원회) ① 전기
	가스열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
	<u>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제10조의16(사무처의 설치) 전기
	가스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기 위하여 전기가스열위원회에
	<u>사무처를 둔다.</u>
<u><신 설></u>	제10조의17(조직에 관한 규정) ①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
	가스열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②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
	기가스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가스열위원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3조의2(전기가스열감독원의
	설립) ① 전기・도시가스・열
	에너지 시장을 효율적으로 감

<신 설>

독하기 위하여 전기가스열감독 원(이하 "감독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감독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감독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13조의3(사무소) ① 감독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 으로 정한다.
 - ②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 연수원, 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 제13조의4(정관) 감독원의 정관에 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 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지부, 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 2. 부설기관의 운영과 관리에관한 사항
 - 3. 재산에 관한 사항
 - 4. 규약·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제13조의5(임원) ① 감독원의 임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② 이사는 상임 및 비상임으로 구분하고, 비상임 이사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 사를 둘 수 있다.
- 제13조의6(업무) 감독원은 전기가 스열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지 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공정한 경쟁체제 조성 및 전

 기사업등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 2.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안건에 관하여 위임받은 사항
 - 3. 전기・도시가스・집단에너지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4. 전기사업등에 관련된 분쟁의 <u>재정에 관한 사항</u>
 - 5. 전기사업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전기가스열위원회 위원장이 위탁한 사항

제13조의7(예산 등) ①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는 감독원의 설립 ·운영과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을 할 수 있다.

② 감독원의 원장은 사업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 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전기가스 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이 경우 감독원의 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 까지 전기가스열위원회에 그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독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제13조의8(비용부담) 감독원은 전기가스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 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9(업무의 지도 및 감독)

<신 설>

<신 설>

<신 설>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가스열위원회는 감독원의 업무를 지도 · 감독하고,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감독원에 대하 여 그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10(비밀누설 등의 금지) 감독원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거 나 근무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11(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독원이 아닌 자는 전기가스 열감독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3조의12(「민법」의 준용) 전 기가스열감독원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 부장관_또는 전기가스열위원회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u><신 설></u>

<u>관</u>	또는	감독	원에	위틱	羊할	수
있	다.					
제24	조(벌칙	적용	용에서	의	공무	무원
의	제)					
1.	· 2. (현	행과	같음))		
3.	감독원	의 임	직원			